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528
결재일자	2013.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2013년 민방위훈련 추진 지침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목 차

I . 훈련 추진방침	2
II . 훈련 추진계획	4
1 훈련개요	5
2 월별 훈련계획	6
III . 서울시 훈련별 세부 실시계획	7
1 민방공 대피훈련	8
2 지진대비 훈련	10
3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	11
4 민방위 시범훈련	13
5 민방위 특별훈련	15
6 지하철 재난대비 훈련	15
7 학교훈련 훈련(청소년 안보교육)	17
IV . 전국 훈련별 세부 실시계획	18
V . 훈련 관리방안	23
1 위기대응 교통통제 훈련 실시	24
2 민방위대원 훈련참여 확대	26
3 시민 훈련참여 확대	27
VI . 훈련 홍보	31
VII . 행정(협조)사항	34
※ 참고자료	40

I. 훈련 추진방침

2013년도 민방위훈련 지침

- ◆ 새 정부 출범 원년을 기점으로 민방위훈련의 역할·방향 정립
- ◆ 민방위 개선시책에 맞추어 시의성 테마훈련 체계 확립
- ➔ 「참여와 체험」을 슬로건으로 삼은 시민 공감형 훈련 정착

- **훈련회수 : 8회**(민방공 훈련(3), 재난대비 훈련(4), 안전사고 대비(1))
 - 전국 단위(3회) : 민방공 훈련(1), 재난대비 훈련(지진, 정전)(2)
 - 市·자치구 단위(4회) : 민방공 훈련(2), 재난대비 훈련(풍수해, 취약지역)(2)
 - 지하철공사(1회) : 안전사고 대비훈련(1)

※ 자치구단위 시범훈련 장소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선정 실시

□ 훈련 패러다임의 변화

훈련기능 축소 [연평해전 이전]	기반조성 단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재도약 단계 [2013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주도 • 단순 통제 위주 • 시민 참여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원 역할강화 • 기본에 충실한 목적 있는 훈련 • 시민 참여와 행동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성 테마훈련 매뉴얼 정립 • 시민 참여 분위기 정착 • 직장민방위대 활성화

□ 훈련의 방향

<p>1. 시의성 테마훈련 체계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에 의한 실제 훈련 강화 ○ 시민공감형 훈련체계 확립 	<p>2. 훈련참여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 사각지대 해소 ○ 직장민방위대 참여활성화 ○ 초·중·고 학교훈련 강화
<p>3. 훈련 협력체계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정착 ○ 사회단체의 훈련 적극 참여 	<p>4. 훈련 홍보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를 통한 정보제공 ○ 취약계층 근접홍보 방안 마련 ○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

참여와 체험

I

훈련 방침

① 민방위훈련 체계 정립

- 시의성 테마를 선정하여 체험위주의 훈련 강화
-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훈련체계 정립
- 전 시민 생명지키는 대피소 가보기 운동 전개

② 융합행정 추세에 맞추어 연계훈련 방식으로 전환

- 전시 재난을 포함한 훈련임을 감안 각 방위요소와의 협력시스템 점검과 융합을 통해 시민보호기능 완성
- 국가위기대응 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연계
 -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 지진대비 훈련, 민방공대피 훈련

③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방식으로 훈련절차 표준화

- 차세대 주력 계층인 **학교 학생훈련 확대**
 - 학교 교육부터 전 시민 안보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시민사회 선도계층인 **직장 민방위대 훈련 활성화**
 - 직장민방위대가 지역주민 훈련참여 선도역할 수행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훈련**
 - 자치구 단위 지역별 특성화된 훈련 실시

④ 특성화된 훈련 연중 실시

- 재난대비 훈련은 전문성이 있는 재난부서에서 주관
 - 민방위대원 등 민방위의 역할과 기능지원
- 매월 재난부서와 합동으로 테마훈련 실시
 - 을지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⑤ 훈련 협력체계와 조직의 실질적 가동

- 군, 경찰, 유관기관, 지역 사회단체(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훈련지원 조직 육성
- 주민보호에 기여하는 민간조직의 참여와 역할 강화

Ⅱ. 훈련 추진계획



II 훈련 추진계획

1] 훈련개요

- 훈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실현목표 : 민·관·군·경 적극적인 훈련참여와 체험을 통해 행동 요령을 습득하여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향상
- 훈련체계
 - 재난대비훈련은 전문성이 있는 재난 부서와 합동훈련(민방위대원 임무/역할)
 - 민방위 훈련의 전문성 및 통합성 강화
- 훈련분야 : 민방공대피, 재난대비, 민방위 시범훈련
 - 민방공대피 훈련 : 화생방, 적기 공습
 - 재난대비 훈련 : 정전대응, 지진대비 훈련

※ 매월 15일 실시원칙(15일이 토요일 → 금요일, 공휴일 → 익일 실시)

구분	훈련 분야	시기	훈련내용 및 주관부서	대상지역
민방공대피훈련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공대피 훈련 ※ 을지연습과 연계 	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전파 ■ 시민대피 및 교통통제 ■ 전시국민행동요령 숙지 	전국일원
재난대비훈련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위기단계별 극복훈련 ■ 비상발전기 가동시험 실시 	전국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대비 훈련 ※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대비 시민행동요령 습득 ■ 청소년 안보·안전교육 	전국일원
시의성 테마별 시범훈련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공 및 독가스테러대비 시범훈련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공 및 생화학 테러대비 시범훈련(주관 : 서울시) 	신용산역 /4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공 및 화생방방호 시범훈련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공 및 화생방방호 대비 직장민방위대 중점훈련 	자치구 단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재난대비 시범훈련 	6.15 11.15 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 등 대형건축물 붕괴대비 ■ 취약지역 복합재난대비 ■ 테러 등 지하철 안전사고 대비 	자치구 단 위

② 월별 훈련계획

월별	훈련종목	훈련내용	비고
1. 10 (목)	○ 정전대비	○ 재난경보전파 ○ 공공기관 의무단전 및 비상발전기 가동 훈련 ○ 정전위기 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습득	전 국
4. 15 (월)	○ 민방공 및 생화학 테러대비 시범훈련	○ 민방공, 생화학테러 및 안전사고 대비 시범훈련 - 장소 : 신용산역(4호선) - 주관 :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시단위 시범훈련
5. 7 (화)	○ 지진대비	○ 경보전파, 시민대피 및 차량통제 ○ 지진대비 시민행동요령 습득 훈련 ○ 청소년 안보·안전교육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전 국
6월	○ 재난대비	○ 풍수해 대형건축물 붕괴대비 등 재난대응 훈련 ※ 풍수해 관련부서와 통합 훈련 - 주관 : 자치구	자치구단위 시범훈련
8. 21 (수)	○ 민방공대피	○ 경보전파, 시민대피, 차량통제 ○ 전 시민 생명 지키는 대피소 가보기 운동 전개 ○ 전시대비 국민행동요령 숙달 훈련 ※ 을지연습 연계	전 국
9. 23 (월)	○ 민방위종합훈련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연계	
10. 15 (화)	○ 민방공 및 화생방 방호 훈련	○ 민방공(적공습) 및 화생방 방호 훈련 ○ 유독가스 누출 대비 등 직장민방위대 중점 시범훈련 - 장소 : 직장민방위대 - 주관 : 자치구 ※ 청소년 안보·안전교육 병행 실시	자치구단위 시범훈련
11월	○ 폭설 등 복합재난대비 훈련	○ 폭설 독가스테러 화재대비 등 취약지역 시범훈련 - 장소 : 터미널, 경기장, 공연장 등 다중집합장소 - 주관 : 자치구	자치구단위 시범훈련
12. 16 (월)	○ 지하철안전사고 대비	○ 테러 화재 등 지하철안전사고 대비훈련 - 주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9호선	지하철공사 시범훈련

※ 자치구 단위 시범훈련은 지역 여건(직장대, 학교, 취약지역)에 따라 훈련
종목은 자율적으로 선정 <재·보궐 선거지역은 선거기간 교육훈련 금지>

Ⅲ. 서울시 훈련별 세부 실시계획



Ⅲ 세부 실시 계획

1 민방공 대피훈련




《 추진 배경 》

적의 도발이나 공습이 이루어 질 경우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민·관·군·경 등 유관기관에서 사태수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실시하는 훈련

□ 훈련개요

- 훈련일시(잠정) : 8월 21일(수) 14:00, 을지연습과 연계 실시
- 훈련지역 : 전국 일원
- 훈련시간 : 20분[공습경보(15분)→경계경보(5분)→경보해제]
- 훈련대상 : 시민(기관·단체·직장·업소 등)
- 훈련주관 : 소방방재청(민방위과)

□ 훈련내용 : 공습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

훈련경보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경보해제 - 전국적으로 동시 경보발령(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
	
주민대피 유도 (주관: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원, 건물별(대형건물), 직장별 훈련참여 유도활동 실시 • 지정된 지하대피소 및 인근 건물 지하로 대피유도 • 노상이나 야외에 대피장소가 없을 경우, 지형지물을 이용 낮은 자세로 대피
	
교통통제 (주관 :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한 도로 우측대피 원칙, 도로여건과 교통량을 감안하여 복열정차 유도 - 교통체증현상에 대한 시민불편 및 민원발생요인 예방대책 강구 • 하차대피가 어려운 경우,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 청취, 차량 정차시 엔진정지 유도 • 군 작전차량, 긴급자동차 등의 통행 차선 반드시 확보 - 군작전·경찰·소방·구급 등 긴급차량 기동훈련 등 다양한 방법모색
	
대피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관련 VTR 상영, 전시대비 시민행동요령 교육실시 • 방독면 사용법 등 실습 및 체험 교육 실시 • 대피종료후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및 방법 교육 • 직장 및 학교단위 교육 훈련 강화

○ **민방위대 참여**

- 민방위대원 역할 : 시민대피 및 교통통제
- 훈련 참여 최소목표 인원 : 동별 55명, 직장대 자원대비 20%이상
- 3~4년차 또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훈련 참여 적극 유도
- 참여방법 등 : 민방위훈련 관리방안 참조

○ **실현목표**

-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훈련범위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훈련성과 극대화

2 지진 대비 훈련

《 추진 배경 》

지진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민·관·군·경 등 유관기관 간 체계적 사태수습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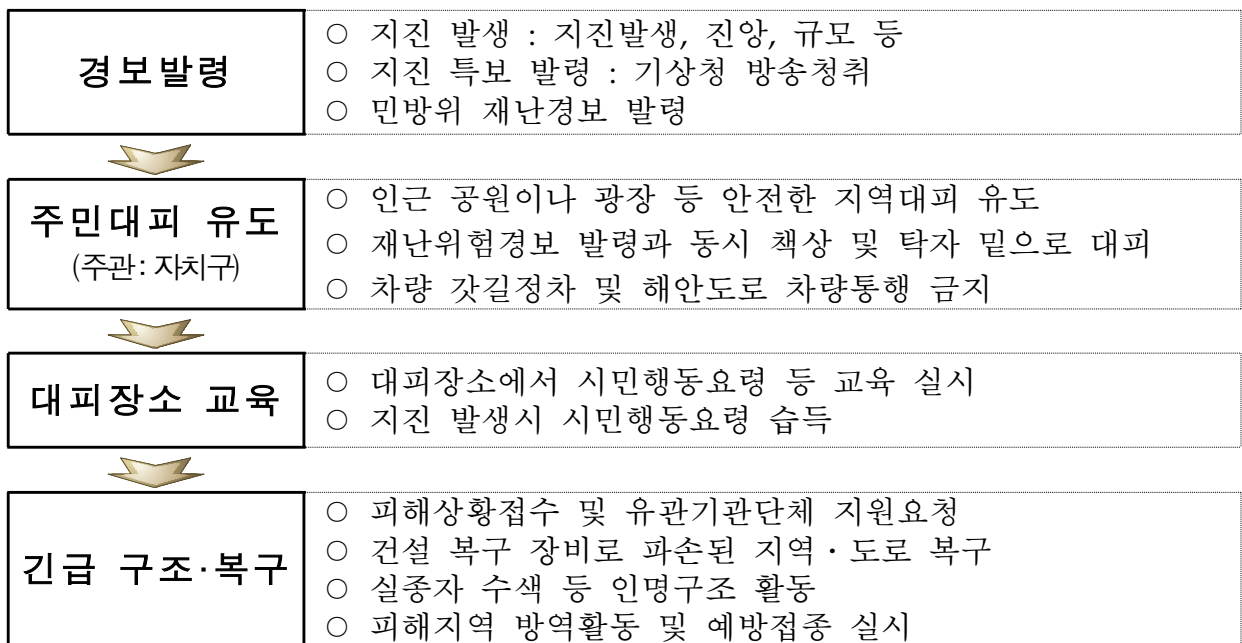
□ 훈련개요

- 훈련일시 : 5월 7일(화), 14:00
※ 201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5.6~5.7)과 연계 실시
- 훈련지역 : 전국 일원
- 훈련시간 : 20분[재난위험경보(15분) → 재난경계경보(5분) → 경보해제]
- 훈련대상 : 시민(기관·단체·직장·업소 등)
- 훈련주관 : 소방방재청(지진방재팀)

□ 훈련중점

- 자치구별 지진 대피훈련
- 초·중·고 학생안전교육 및 지진 대피훈련
- 시 및 자치구청사(서울:정부청사) 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
- 방사능방재 시범훈련과 연계 주민대피 중점훈련

□ 훈련 흐름도 : 재난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및 수습·복구 훈련



○ **민방위대 참여**

- 민방위대원 역할 :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구조복구 등
- 훈련 참여 최소목표 인원 : 동별 55명 이상, 직장대 자원대비 20%이상
- 민방위 3~4년차 또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훈련참여 적극 유도
- 참여방법 등 : 민방위훈련 관리방안 참조

3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

《 추진 배경 》

전력수급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범시민 절전분위기 조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위기대응 훈련

□ 훈련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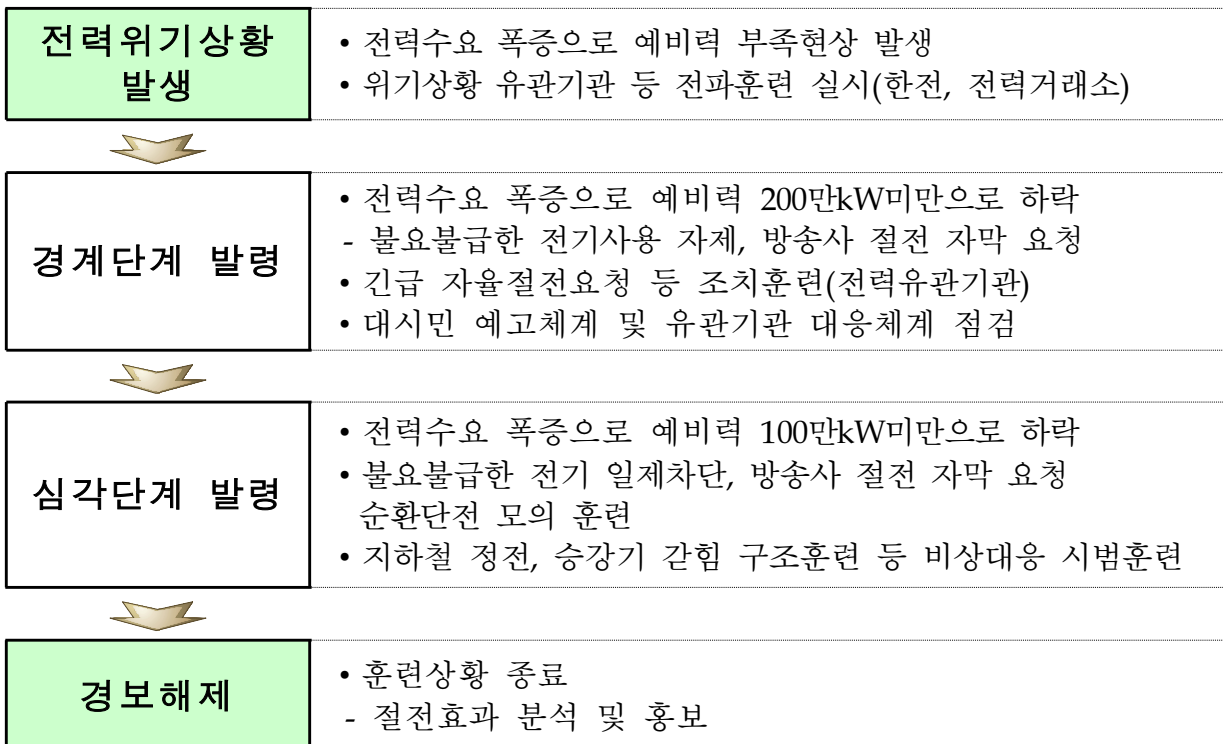
- 훈련일시 : 1월 10일(목), 10:00~10:20(20분간)
- 훈련지역 : 전국 일원
- 훈련대상 : 시민(기관·단체·직장·업소 등)
- 훈련주관 : 국무총리실 총괄, 관계부처 합동

※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미실시, KTX·철도·지하철 정상운영, 병원 정상진료

□ 훈련중점

- 가정, 상가, 사무실, 산업체 20분간 자율절전 훈련
- 공공기관 의무절전 및 비상발전기 가동훈련
- 순환단전(심각단계 발령) 모의훈련
- 전력 유관기관 간 전파체계 및 대시민 예고체계 점검훈련

□ 훈련 흐름도 : 재난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및 시민절전



4 민방위 시범훈련

□ 시 단위 시범훈련

<민방공대피, 테러 및 안전사고대비 훈련>

- 일시 : 4월 15일(월)
 - 장소 : 신용산역(4호선)
 - 훈련주관 : 서울시, 서울메트로
 - 훈련종목 : 민방공대피, 테러 및 안전사고 대비
 - 훈련내용
 - 적 생화학 공격 및 테러대비 훈련
 - 민방공대피 및 지하철 안전사고 대비 훈련
 - 경찰, 소방, 공공기관, 훈련관계관 등 참여
- ※ 자치구 중점훈련의 규모확대 등 사전협의

□ 자치구 단위 시범훈련

재난대비 시범훈련(자연/인적재난)

- 일시 : 6월 중 집중 실시
- 장소 : 자치구별 취약지역 자체 선정
- 훈련주관 : 자치구청장
- 훈련종목 : 풍수해 등 대형건축물 붕괴에 대비하여 훈련종목 선정
- 훈련내용
 - 훈련시 자치구청장 현장 지휘
 - 풍수해대비 훈련
 - 풍수해업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시·장소 선정(1시간내외) 하여 훈련 실시

민방공 대피 및 화생방방호 시범훈련

〈직장민방위대 훈련〉

- 일시 : 10월 15일(화)
- 장소 : 자치구별 직장민방위대 등 자체 선정
- 훈련주관 : 자치구청장
- 훈련종목 : 민방공 대피, 유독가스 누출 대비 등 직장민방위대 방재여건을 감안하여 훈련종목 선정
- 훈련내용
 - 훈련시 직장민방위대장 현장 지휘
 - 민방공 대피 및 화생방 방호 등 복합재난대비 시범 훈련
 - 직장 민방위대 특별훈련 연계, 1시간내외 훈련 실시

복합재난 대비 시범훈련

〈다중집합장소 및 취약지역 훈련〉

- 일시 : 11월 중 실시
- 장소 : 자치구별 다중집합장소 등 자체 선정
- 훈련주관 : 자치구청장
- 훈련종목 : 테러 및 화생방, 화재 등 취약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훈련종목 자율적으로 선정
- 훈련내용
 - 훈련시 자치구청장 현장 지휘
 - 고속버스터미널, 경기장 등 다중집합장소 등 복합재난대비 훈련
 - 민방공대피훈련 연계, 1시간 내외 훈련 실시

-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훈련 미실시(민방위기본법제23조제6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선거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당일 까지

5 민방위 특별훈련

○ 직장민방위대 특별훈련

- 훈련개요

- 훈련시기 : 연1회 이상(1시간 내외)
- 훈련대상 : 전 직장민방위대(전 직원 참여)
- 훈련주관 : 민방위대장(직장장)
- 훈련종목 : 직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종목 선정
※ 민방공 대피, 직장방호, 화재방방호, 유독가스/화공약품 누출 대비 등
- 관리방안 : 직장민방위대 검열 중점사항으로 관리

- 훈련방법

- 민방위대장(대표자)의 훈련 현장 지휘
- 민방위사태 발생단계에서부터 사태수습까지의 전 과정
- 민방위의 날 훈련 시 계열별 순환 시범훈련 실시
- 지역주민과의 연계훈련 실시는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
- 훈련 분위기 조성,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 입간판 설치, 민방위기 계양, 홈페이지 Pop-Up
 - 전광판, 직원조회 및 간담회, 게시판, 안내방송 등 활용

○ 초·중·고 학교 특별훈련

- 훈련개요

- 훈련시기 : 연1회 이상(1시간 내외)
- 훈련대상 : 학생
- 훈련주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학교장)
- 훈련종목 : 학교 여건을 고려한 자체 종목 선정

- 훈련방법

- 경보발령과 동시에 전 교직원·학생 대피를 원칙으로 함

- 자치구별 1개소 시범학교 선정 취재·방송 지원 등 홍보 강화
- 대피훈련 중에는 안보·안전에 관한 생활 민방위 교육 실시
 - 안보측면 : 전시행동요령, 주민신고, 화생방방호 등
 - 안전측면 : 화재, 풍수해, 교통사고 등 예방 및 대처 등
- 각 교실과 대피시설 내 시청각 교육시설 활용
 - VTR 상영, 강의, 실기, 실습 등
- 담당교사, 관계전문가, 119구조대원, 지역군부대장 등을 강사로 활용
 - 자치구에서는 소화기, 완강기, 방독면 등 교육장비는 적극 지원
- 훈련 우수학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교육재정, 교육기자재 지원 등

○ 취약지역 특별훈련

- 훈련개요

- 훈련시기 :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수시)
- 훈련대상 : 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훈련주관 : 자치구청장(동장)
- 훈련종목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체 종목 선정

- 훈련방법

- 구청장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
- 화생방, 국지도발, 자연재난 등 사태수습훈련 실시
- 국가중요시설 주변 등 국지도발 및 테러발생 우려지역 중점

⑥ 지하철 재난대비 훈련

○ 훈련운영

- 화재(방화, 전기과열 등), 독가스테러, 차량기지 안전사고 등 사태수습능력 배양
- 스크린도어(PSD) 이용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훈련 병행 실시
- 실제상황시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한 유관기관별 공조체제구축
- 각 공사 자체계획에 의거 월별 윤번제 실시(매월 1개소)
- 훈련실시 역사 관할 자치구 훈련지원(민방위대원, 장비물자 등)

○ 훈련실시

- 훈련주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주)
- 훈련시간 : 1시간 이내
- 훈련내용
 - 방독면 착용(안전장비 전시) 등 안전대피유도 시민홍보
 - 승객 및 승무원에 의한 사태신고 및 전파
 - 승무원 초동조치 및 수동출입문 개방, 비상탈출
 - 승객긴급대피 및 인명구조
 - 유관기관 출동 사태수습
 - 기타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 점검정비 등

7] 청소년 안보교육

○ 훈련운영

- 유관기관(지역교육청, 학교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학교단위 훈련장소 제공, 평가시 훈련 실적 반영
- 서울시 ↔ 서울시교육청 ↔ 수도권방위사령부 협의 청소년안보교육 집중 시행 추진 (※ 소·중·고 학교 특별훈련과 별도로 추진)
- 지역 재난대비훈련에 학생참여 및 참관 적극 권장
- 평시 생활민방위 의식제고 및 체험활동 전개

○ 훈련실시

- 민방위의 날 훈련시(5, 10월) 안보교육 집중실시
- 유관기관(지역교육청, 학교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학급 안전 및 체험교육시간 이용, 생활민방위 교육(연 4시간) 실시 협조
- 재난대비훈련에 학생참관 적극 유도
 - 사전 협조공문 발송, 홍보안 배부, 현장 실습교육 실시
- 재난대비훈련의 내실운영 및 지원강화
 - 시범학교를 훈련장소로 활용, 현장중계 등 홍보강화
 - 훈련운영 관리카드 자치구 및 동사무소 비치, 전담교사 훈련 운영상황 기록 관리
- 우수시범학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표창, 학교홍보, 교육기자재 지원 등 행·재정 적극지원
 - 교육훈련 전담교사 자체민방위교육 인정 (4시간)
- 평시교육을 통한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
 - 특활, 기타 각급 학교 안전시간 이용, 연간 4시간
 - 교재는 VTR·만화·팸플렛 등을 실정에 맞게 활용
 - 소화기·완강기·방독면 등 장비는 해당 자치구에서 지원
- 서울시 『서울시민안전체험관(광진구 능동)』, 『서울민방위교육장(중랑구 태릉)』을 안전사고 예방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

IV. 전국 훈련별 세부 실시계획



IV 전국 훈련별 세부 실시계획

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서울시 공통)

- 훈련개요
 - 훈련일시 : 1월 10일(목) 10:00 ~ 10:20(20분)
 - 훈련대상 : 시민(기관·단체·직장·업소 등)
 - 훈련지역 : 전국일원
 - 훈련주관 : 지식경제부

② 민방공 대피훈련(서울시 공통)

- 훈련개요
 - 훈련일시 : 8월 21일(수)
 - 훈련대상 : 시민(기관·단체·직장·업소 등)
 - 훈련지역 : 전국일원
 - 훈련회수 : 총1회
 - 을지연습연계 : 8월 21일(수) 14:00~14:20(20분)

③ 지진대비 훈련(서울시 공통)

- 훈련개요
 - 훈련일시 : 5월 7일(화)
 - 훈련대상 : 시민(기관·단체·직장·업소 등)
 - 훈련지역 : 전국일원
 - 훈련주관 : 소방방재청(지진방재팀)
 -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5.6~7)과 연계하여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 훈련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재난대비훈련)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 훈련)
 - 기 간 : 2013. 5. 6.(월) ~ 5. 7.(화) / 2일간

· 참 여 : 402개 기관·단체(중앙 22, 지자체 244, 공공기관·단체 136)

※ 국무위원 소관훈련 임석추진 / 실제훈련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전훈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 대피훈련 등)

· 내 용 : 풍수해, 지진, 인적·사회적재난 등 재난대응 종합훈련

· 평 가 : 전문가 평가단 구성, 서면·현지평가

· 주 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방방재청

- 훈련내용

· 태풍·지진에 따른 복합재난대응 훈련

· 지진·지진해일 민방위 재난경보 발령(14:00~14:20)에 따른 시민대피 실제대피, 차량통제 훈련

- 학생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 동해안 지진해일 대피훈련(3개 시·도 15개 시·군·구)

· 고속철도 대형사고 및 화학 유해물질 통합 도상훈련

- 고속철도 탈선(부산 북구), 화학유해물질(충남 서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훈련계획 보고, 여름철 재난관리대책 점검(국무총리 주재)

· 사회적재난 등 대응 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통합훈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감염병, 가축질병, 폭염, 신종인플루엔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질오염)

· 감염병·가축질병 통합 실제훈련

- 가축질병 발생 대응 의료 방역 서비스 기능 실행

· 전력분야 위기대응 기능훈련

- 폭염으로 인한 전력분야 위기대응 상황실 운영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등 산하기관)

- 인적재난 대응훈련

- 인적재난 대응 통합 실제훈련
 - 공동구 재난(영등포·서울시·국토해양부)
 -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대구 서구, 인천 중구, 광주 남구, 대전 중구, 울산 중구, 세종, 소방방재청)
 - 내수면 유도선 사고(충북 충주, 소방방재청), 항공기 사고(부산 강서, 국토해양부)
- 인적재난 대응 자체 실제훈련
 - 문화재 화재(문화재청), 지하철 대형화재(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난사고(해양경찰청)
 - 원전사고(원자력안전위원회), 교정시설 화재(법무부)

- 추진일정

- 훈련 시행계획 수립 통보 : '13. 2월
- 훈련 평가 및 홍보계획 통보 : '13. 2월
- 훈련 참가기관 설명회 : '13. 2월
- 훈련 준비 T/F팀 구성 운영(중앙, 시·도) : '13. 2~4월
- 기관별 토의를 통한 훈련 준비 : '13. 2~4월
- 훈련 준비상황 보고회 : '13. 4월
- 훈련 실시 : '13. 5. 13. ~ 5. 15.

- 협조사항

- 민방위의 기능과 역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2013년 훈련 기본·시행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 추진
 - ※ 통합 도상훈련 실시 이외 자치구는 자체 도상훈련 실시
- 훈련 준비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
- 시민 훈련 참여(민간단체 등) 적극 추진
- 홈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기관별 훈련 홍보 협조
- 연중 월별훈련(소방방재청 주관) 실시를 통한 대응역량 지속 보완

4 을지연습

□ **연습일정** : 2013. 8. 19 ~ 8. 22(4일간) 예정

※ 8.21(수) 14:00 을지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훈련(예정)

□ 기본방침

- 연습은 국무총리 주관으로 실시하며, 연 1회 실시 원칙
 -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연습 실시
- 연습 기본은 도상연습, 실제훈련, 토의형 연습으로 실시
- 계획·통제 및 평가하기 위한 중앙계획/통제단을 편성·운영
- 참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임의참가기관, 중점관리 지정업체 등

□ 주요 훈련내용

- 전시전환 절차연습
 - 평시 행정조직을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연습
- 도상연습
 - 전쟁 상황을 가정한 연습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참가자가 서면으로 제반 조치를 취하는 연습
- 전시 현안과제 토의연습
 - 중무계획상의 주요과제를 유관기관 및 관련담당자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 토의하는 연습
- 실제훈련
 - 인력·물자 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동원절차를 실제행동으로 숙달시키는 훈련

□ 추진일정

- 을지연습 추진방향(안) 외교정책조정회의 상정 : 3월
- 을지연습 지시서 및 기본계획 하달 : 4월
- 중앙계획/통제단 운영 등 을지연습 순회 교육 : 5월~6월
- 을지연습 실시 및 평가 : 8월

□ 협조사항

- 민방위의 기능과 역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6 인적재난 대비훈련

인적재난 대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훈련 매월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회성 보완, 지속적인 대응 역량 강화

□ 훈련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재난대비 훈련)
- 기 간 : 매월 1회 실시 예정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4·5월 및 을지연습 8월 제외
- 목 적 : 인적재난 매뉴얼의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검증
- 참 여 : 소방방재청(주관), 중앙·지방 유관기관

□ 훈련내용

- 인적재난 유형 중 매월 시의성 있는 테마 선정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부처 내부 각 부서별 임무와 역할 검증
- 기관장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반영
- 훈련계획 수립이전 단계부터 지역의 위험성 분석을 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훈련실시
- 자원관리계획 및 상호협력계획에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별 재난 대응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점검
- 훈련 참여 기관 관련부서장 필수 참석
-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실제 사고발생 시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

□ 협조사항

- 민방위의 기능과 역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전국별 인적재난 훈련 계획

월 별	일 시	훈련종목	장 소	주관기관
1월	10일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	전 국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2월	월중	장대터널 대규모 교통 사고	추후선정	국토해양부
3월	월중	대규모 산불	추후선정	산림청
5월	13일	지진대비	전 국	소방방재청
6월	월중	건축물 붕괴	추후선정	소방방재청
7월	월중	내수면 유·도선 사고	추후선정	소방방재청
8월	21일	민방공 대피훈련 을지훈련 연계	전 국	행정안전부
9월	월중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추후선정	환경부
10월	월중	항공기 사고	추후선정	국토해양부
11월	월중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추후선정	소방방재청
12월	월중	지하철 대형사고	추후선정	국토해양부

V. 훈련 관리 방안



훈련 관리방안

① 위기대응 교통통제 훈련 실시

□ 추진배경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시 원활한 사태수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통제 중요

< 기본 가정 >

- 전면전 발생시 북한은 우리의 국가지도부를 마비시키고 공황현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 항공기와 미사일, 장사정포 및 화생방 무기를 동원하여 수도권 등을 집중 공격할 것임

- 경찰이 소관 비상대비 계획에 의한 교통통제 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상대비태세 강화

□ 관련계획

- 총무 3700 2012년도 행정안전 집행계획(부록3 : 주민 및 차량통제계획)

- 적의 침공은 사전에 예고가 없으므로 평시부터 준비
- 민방위대는...경찰·예비군을 지원... 골목통제 및 주민계도 임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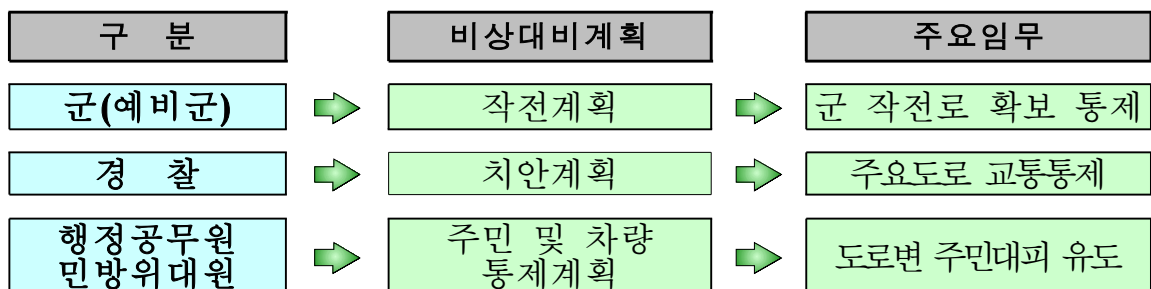
- 총무 3700 2012년도 치안계획(행정안전부 집행계획 부록4)

- 평소 주민 통제요원에 대하여 실정에 맞는 종합훈련 실시
- 교통통제요원 훈련은..... 관계기관과 협조, 경찰서 단위로 실시

- 군 작전계획(국방부) : 군 작전로 확보 등

※ 주민 및 차량은 군 작전통제 하에 작전계획과 연계하여 통제

□ 추진체계 (주관 : 경찰청장)



□ 훈련방법

- 관련 비상대비계획에 의한 각급통제소 실질적 가동
 - 훈련 목적에 맞게 통제소는 신속적으로 운영
 - 교통통제 계획의 실질적 가동에 중점
 - 훈련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비상대비계획에 반영

- “긴급대피(공습경보)단계”를 적용한 실전과 같은 차량통제 및 주민대피 유도

- 경찰의 전시 임무에 맞는 책임 있는 교통통제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전국 교통통제계획 수립
 - 훈련 통제노선, 교통통제요원 배치계획, 유관기관 협조, 주민홍보 등
 - 군작전·행정보 완전확보, 간선도로, 지선도로 비상차로 확보
 - 지방 인력을 서울배치, 군(예비군) 지원 등 가용인력 총동원
 - 통제소 요원 및 통제장비 확보
 - 지방 인력을 서울배치, 군(예비군) 지원 등 가용인력 총동원
 - 바리케이트, 차량, 중장비 등 동원 가능한 통제장비 총동원

- 군, 공무원, 민방위대는 경찰 요청에 따른 교통통제 지원
 - 국방부는 각 계획된 통제소에 군 및 예비군 배치
 - 경찰 교통통제 지원 철저 및 군 작전로에서 기동훈련 실시
 - 공무원 및 민방위대는 경찰·군·예비군을 지원하여 골목통제 및 주민 계도임무를 수행
 -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원의 적극적인 훈련참여 유도
 - 공무원, 자원봉사 단체 등의 참여로 계획에 따른 충분한 인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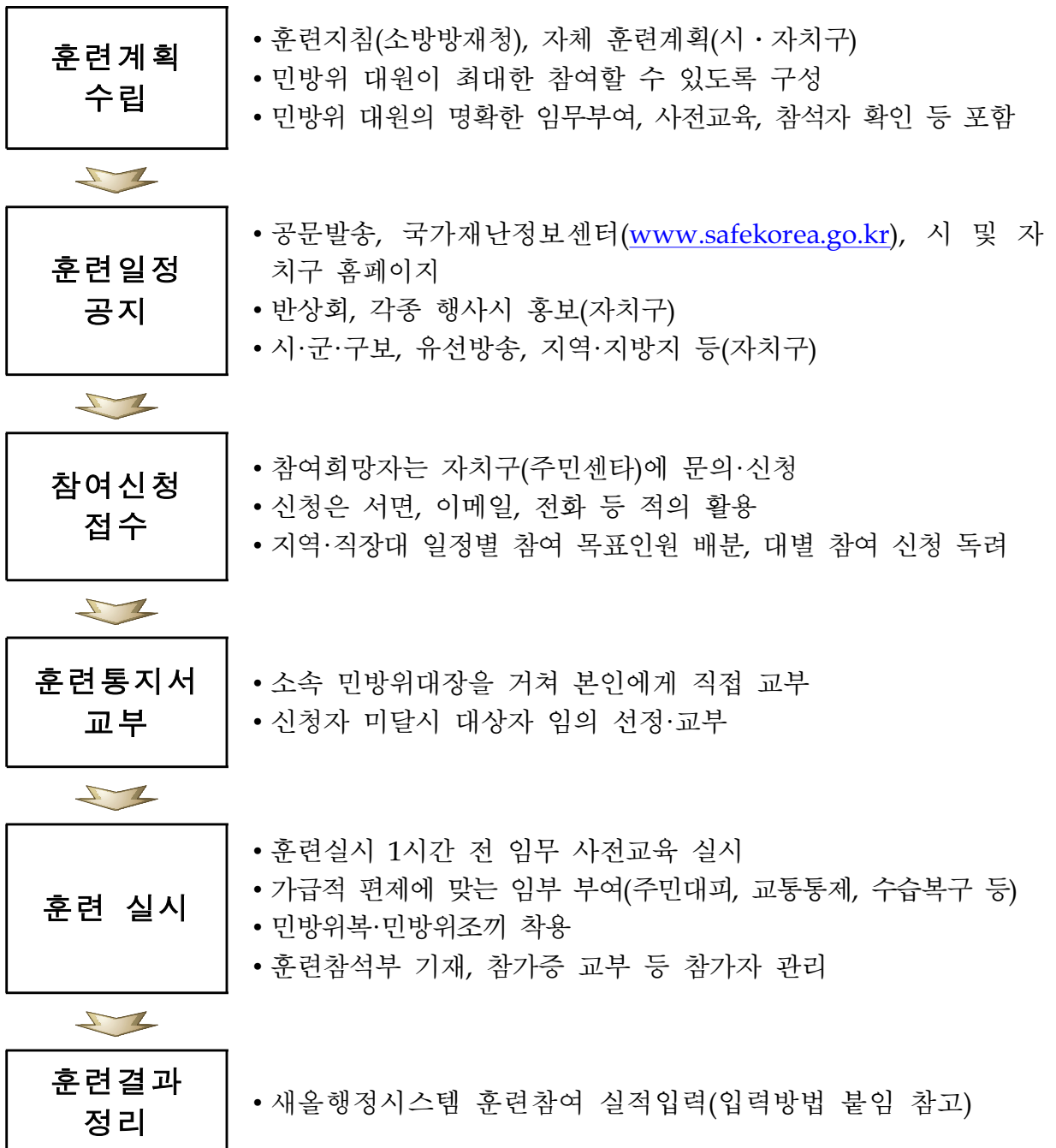
② 민방위대원 훈련참여

□ **대상** : 2~4년차 민방위대원

□ **내용** : 민방위 기본교육(4시간) 대신 훈련참여가 가능토록 조치

※ 5년차 이상 소집훈련도 대체 가능

□ **추진절차**



③ 시민 훈련참여 확대

□ 현 실태 및 문제점

- “민방위훈련을 왜 해?” 라는 안일한 의식 존재, 훈련에 대한 관심도 저하, 재난안전의식 부족
- 민방위 훈련을 단순하게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 불편한 것으로 인식
 - 훈련 시 주민이동 및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할 뿐더러 백화점, 상가, 공장 등은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 개선내용

- 민방위훈련의 필요성 및 논리 재정립
 - 재정립된 논리를 바탕으로 훈련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 민방위훈련을 국가안보와 재난사태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 재난대비 생활민방위로 확대
 - 지진, 정전대비, 복합재난대비훈련으로 영역 확장
- 소비자, 시민단체가 보유한 홍보채널 활용, 전 국민 자발적 훈련참여 유도
 - 전 부처, 지자체와 연계된 각종 시민단체를 활용하여 훈련홍보 및 자발적 훈련참여 유도
- 방송, 언론 등 홍보매체별 훈련 홍보방법의 다양화
 - 뉴 미디어(SNS,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활용한 취약계층 홍보 강화
- 학생을 대상으로 “민방위 체험교실” 운영
 - 어려서부터 비상시 대처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초등학생 대상 실시

□ 추진계획

- 시민 인식개선 및 참여유도를 위한 집중홍보
 - TV, 라디오 실황방송 및 언론사 공익광고 실시 확대, 훈련의 필요성과 국민행동요령 등 정보 제공
- 직장민방위대 중심으로 직장단위 민방위훈련 실시
 - 민방위훈련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확산 및 참여분위기 조성
- 초등학교 민방위 체험교실운영 교육과정 반영(서울시교육청 협조)
 -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민방위 체험교실운영 등 체험기회 확대

VI. 민방위훈련 홍보



VI 훈련 홍보

□ 스마트폰 앱 “서울안전 지키미”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접근성이 많은(1일 사용자 3만명 이상) “모바일 서울”중 스마트폰 앱 **서울안전 지키미**” 을 활용하여 민방위의 날 훈련 홍보 실시
- 비상시 대처요령, 실시간 재난상황전파, 대피시설 위치 찾기, 민방공 대피훈련 안내 제공하는 시스템 홍보 강화
- “생명 지키는 대피소 가보기 운동” 전개를 위한 대피시설 위치 등을 포함한 전단지 제작·배포
 -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및 반상회 시 홍보 실시
- 휴대폰 등 훈련안내 문자 발송(공습경보, 경계경보, 해제)

□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라디오, TV 훈련방송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훈련일시, 훈련중점, 훈련시간대 주민·가정·직장에서 해야 할 일
- 지역 유선방송, 인터넷, 행정소식지, 통장회의 등 활용
 - 민방위 가로기는 훈련개시 2~3일 전부터 게양(직장단체 협조요청)
 - 자치단체 출입구 입간판 설치 및 인터넷사이트 알림창 게시
- APT 구내방송 및 마을앰프 등을 이용한 안내방송 실시
 - 안내방송은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실시토록 홍보

□ 뉴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

-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훈련일정과 행동요령을 홍보 전파
- 자치구 홈페이지에 알림창 게재
-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 게재

□ 다문화가정 및 이주근로자에 대한 훈련홍보

- 민방위 훈련 홍보물(리플릿이나 소책자)을 제작하여 주민자치 센터 및 각 가정에 배포
- 다문화센터 등 다양한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활용
- 민방공 대피훈련 참여 및 민방위 훈련 참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외국인에 대한 대피훈련 홍보

- 공항·호텔 등 외국어 입간판, 자체방송 실시
- 주한미군사령부 등 방송 홍보

□ 전광판 활용 홍보

- 지하철,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대중 교통시설 LED, LCD 홍보 및 훈련실황방송 청취토록 조치
 - 지하철, 열차내 훈련 전일 및 당일 훈련 안내·자막방송
- 관공서 및 기업체의 전광판 활용

□ 다중집합장소 홍보

- 백화점, 터미널, 극장, 공원, 경기장 등에서 사전 안내방송 및 대피 시간 중 라디오 중계 및 훈련 당일 민방위의 날 입간판 게시
- 훈련시간 바로 직전, 자체 방송시설 이용 비상구 알리기, 대피장소 대피요령 등 안내방송 실시
- 훈련시간에는 출입문을 폐쇄하여 입·출객 통제

□ 각종 사회봉사 단체 등을 통한 홍보

- 바르게, 새마을, 의용소방대, 재향군인회, 자율방재단 등
- 훈련참여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실천덕목으로 선정
 - 훈련시 다중집합지역 중심으로 유도활동, 캠페인 병행 실시
 - 협회, 단체를 통한 계통별 자체지도 및 홍보
- 참여유도 현수막, 어깨띠, 민방위모자, 완장 등 이용 홍보
 - 단체주관 각종 행사(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시 훈련내용 홍보

VII. 행정(협조) 사항



VII 행정(협조) 사항

1 전 기관 공통사항

- 산하기관·단체를 통한 훈련안내·지원 및 협조강화
 - 민방공 대피훈련 시 입간판, 안내방송 등 훈련분위기 조성
 - 민방공 대피훈련 중 전시 및 테러 등 비상대비 행동요령 교육
- 민방위의 날 훈련과 중첩되지 않도록 행사일정 조정
 - 민방공 대피훈련일(8월) 기관·단체장의 행사일정, 기념일, 축제일, 이벤트 행사 등
- 각종 유사 재난대비 훈련을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 실시
 - 일정, 계획 등 훈련기관과 사전협조 요청

2 실국, 유관기관·단체 협조사항

- **각 실국별 협조사항**
 - 언론담당관 : 대국민 홍보 및 계도
 - 학교지원과 : 각급 학교 민방위교육 참관 협의 등
 - 복지건강본부
 - 보건관련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대피훈련 참여 협조 (서울시시립병원, 건강관리 협회 등)
 - 의료기관·단체 등 지역·직장 인명구조훈련에 참여유도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각종 운동경기·문화행사를 훈련 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협회에 통보하여 경기일정 조정
 - ※ 고궁 『수문장 교대의식』 등 시간 조정, 방문객 사전 홍보 철저
 - 교통정보센터
 - 대피훈련 시 운송사업체의 교통통제에 협조 조치

- 각종 교통수단 이용 승객이 훈련방송 청취토록 조치
- 대피훈련 시 차량은 시동을 끄고 도로 우측으로 주·정차 협조 조치
- 노상·공공주차장에 대피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미 징수

< 교통정보센터 >

◆ 도로전광판에 교통통제 홍보 협조

- 홍보기간 : 5, 8월(당월 훈련 훈련 6일 전)
- 장 소 : 서울시 전 지역
- 홍보매체 : 도로전광판(223개소)
- 홍보방법 : 자막 방영(24시간)

◆ 운수업체홍보 협조

- 홍보기간 : 5.13, 8.21(훈련 당월 훈련일 14시)
- 홍보대상 : 개인·일반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 홍보내용 : 민방공 대피(재난대비)훈련 시 운행중인 차량은 지하대피시설이 있는 가까운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승객은 하차시켜 지하대피 시설로 대피토록 차내 방송실시 협조

- 소방재난본부

-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운영
- 화재훈련 지도 주관
- 화재훈련현장 소방차량 지원
- 훈련지휘소(상황실) 운영 및 훈련통제관 배치
- 소방안전점검 지도 및 감독

○ 유관기관·단체 협조사항

- 서울특별시 시의회

- 대피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개회 시간 조정
- 의회가 개회중일 때에도 대피훈련 참여 협조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사운영계획에 민방위 시간을 반영하고, 각급 학교별 수준에 맞는 훈련과 전시, 재난, 비상대비에 필요한 시민행동요령 (화생방) 등 민방공 대피훈련 운영 및 지도

▶ 민방위의 날 훈련일 청소년 안보교육 시행

- 일 시 : 5, 10월 민방위의 날 민방공대피 훈련 실시 전·후
- 강 사 : 지역 군부대장 등
- 주 관 : 자치구청장-지역군부대장

- 초등학교학생에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등 포스터그리기, 글짓기, 표어 과제물 부여
- 민방위업무 담당교사 지정, 유사시 학생활동 지도전담

- 서울지방경찰청

- 민방공 대피훈련 시 적색 교통신호등의 변환 협조
- 보행인 및 차량의 긴급대피 유도 주관
- 민방위 시범훈련장 주변의 시민 및 교통 통제
- 훈련지휘소(상황실) 운영 및 훈련통제관 편성 배치
- 지역별 상습 차량병목지역 등 주요교차로 교통경찰 배치 증강

- 수도권방위사령부

- 훈련 당일(14:00~14:20) 한남대교, 동호대교, 반포대교, 성수대교 남산 1.2.3호 터널 등 주요도로 군사 작전로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병력지원 협조
- 군작전·행정로 비상차로확보 훈련 시 군부대 작전 차량(4/1톤, 등) 지원 협조
- 민방위의 날 청소년안보교육 지원

▶ 일 시 : 5월, 10월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전·후

▶ 지 원 : 지역군부대장 등에 의한 안보교육

- 자체 대피훈련계획에 따른 훈련운영
- 사태수습훈련에 따른 인력 및 장비지원 : 시 및 자치구의 협조 요청시

3 자치구 협조사항

○ 세부훈련계획(연간) 수립 시행

- 자치구 실정에 맞는 훈련 계획수립·운영
 - 훈련종목 선정시 재난·재해부서와 사전 협의
- 민방위 지휘소(상황실) 및 현장지휘소 운영
- 훈련진행사항 시민 안내 및 안전사고대비 홍보
- 민방위의 날 훈련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민방위 대원 훈련 안내
- 연간 훈련계획 보고 : 2013. 3. 8까지(기일 준수)

○ 월별 훈련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 자체 연간 훈련계획에 의거 월별 세부계획 수립·실시
- 보고시기
 - 계 획 : 훈련 월 10일전까지
 - 결 과

- ▶ 요약보고(당일 17:00한 팩스, 혹은 lih513478@seoul.go.kr)
- ▶ 최종보고(훈련 후 5일 이내)
- ▶ 훈련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첨부 참조)

붙임1

보고서식 [자치구 및 지하철공사]

(○○자치구 및 지하철공사)

자치구별 시범 및 중점 훈련 계획

○ **보고대상 : 25개 자치구**

월/훈련종목	훈련대상	계 (명)	민방 위대 원	민방위 (통)대 장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자원봉 사및기 타	시민참 여 인 원
4월15일 (민방공대피시범훈련)	신용산역	시	단	위	시	범	훈	련		
5월7일 (지진대비)	00지역									
6월중 (풍수해대비시범훈련)	00지역									
8월21일 (민방공대피)	00지역									
10월15일 (민방공대피훈련 :직장대시범훈련)	00직장대									
11월15일 (복합재난대비훈련 :다중집합장소시범훈련)	00지역									

2013년도 청소년 안보교육 계획

○ **보고대상 : 25개 자치구**

구 분	훈련 대상	학급	학생	주 소	전 화
5월	청소년안보교육				
10월	청소년안보교육				

□ 지하철 2013년도 월별 훈련 계획

○ 보고대상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운영(주)

월별	종 목	훈련대상역명	호선	소속(관리소)	1일 이용객(명)	전 화	비 고
3월15일							
4월15일							
5월13일							
6월중							
7월15일							
8월21일							
9월15일							
10월15일							
11월15일							
12월15일							

민방공 대피훈련 시 상황별 행동요령

분 야 별	행 동 요 령
○ 국회·지방의회가 개회중 일 때	○ 민방공대피훈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므로 개회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방송사 방송중일 때	○ 라디오 훈련 실황방송은 방송사별 동시 전파 ○ TV방송사는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게 방송 시간 조정 - 불가피한 방송인 경우 자막으로 민방공대피훈련 안내 등 홍보 ※ 연간 훈련일정 사전통보, 방송프로그램에 반영
○ 운동경기 중일 때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시간조정 ※ 대한체육회 및 각 기관·단체 등에 훈련일정 통보 ○ 경기 중이라도 대피훈련에 참여 예) 축구·야구·농구·핸드볼·럭비·경마·복싱· 태권도·육상·레슬링·유도·역도·수영 등
○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중일 때	○ 응급환자와 병상에 있는 환자는 실내 안전보호 ○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의사를 제외한 의사·보호자· 기타 병원관계자는 참여
○ 학교수업 중일 때	○ 수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 대피소 수용규모 감안, 학년별 윤번제 실제 대피 - 대피시설이 없는 학교는 강당·체육관 등을 훈련 대피소로 활용 ○ 대피시간 중에는 민방위분야 교육 실시 ○ 초등학교 하교시간 조정 등 ※ 세부내용은 학교훈련 분야 참조
○ 고속도로 운행차량· 철도지하철항공가 선박 등 교통수단	○ 운행중인 경우 미통제 ○ 출발전인 경우는 출발통제,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운수관련업체(단체)등에 훈련일정 통보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진입차량 통제 ※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자는 훈련중 차량의 입·출입 통제

분 야 별	행 동 요 령
○ 법원에서 재판중 일 때 (사법부)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재판일정 조정 ○ 재판중이라도 일시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	○ 생산활동이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는 훈련참여
○ 사무실 등에서 근무 중인 직장단체	○ 업무의 특성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수요원 1~2명을 제외한 근무자는 모두 훈련에 참여 - 대피중 민방위분야 교육실시
○ 직장단체 등에서 회의중일 때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회의 일정 및 시간 사전 조정 ○ 회의와 집회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전기·통신·소방·의료기관	○ 소방·응급복구·긴급구조 장비 및 인원 적극 참여 ○ 훈련참여 직원 외 인원·장비는 비상대기
○ 위험물 취급업소 (염소·포스겐·가스 업소 등)	○ 필수요원제외, 종사원 대피훈련 참여 ○ 직장·민방위대원 직장 사주경계 ○ 관련시설물 안전점검
○ 은행·증권·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	○ 일상업무 중단, 훈련참여 ○ 입·출금 중지 및 고객 안전대피
○ 다중집합장소 (호텔·터미널·백화점·대형건물·위락시설 등)	○ 훈련기본원칙에 따라 건물지하나 가까운 대피소로 종사원·고객 신속 대피 ○ 대표(업주)는 훈련실황방송을 청취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 확보, 비상구 알리기 등 자체방송 ○ 훈련지도요원 집중배치(시군구,직장)
○ 개인업소 (노래방·오락실·독서실·목욕탕, 찜질방 등)	○ 종사원·고객 신속 대피 ○ 자체 안전점검 강화 (화재·유독가스 대비)
○ 위락시설단지	○ 운행중인 각종 위락시설 운행중단 ○ 입장객의 안전대피 유도 ○ 매표작업 중지 및 입장객 출입통제

1 전시대비 시민행동 요령

1. 공통 - 행동요령

-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적의 거짓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군사작전 등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2.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이 울리고, 라디오·TV·악성기 등으로도 경보 방송을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 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운동장·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뒤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 ▶ 사이렌을 3분 동안 파상음이 울리고, 라디오·TV·악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필품·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4. 《화생방상황》 - 방호요령

(1) 와생방전이란 무엇인가?

- 화생방전이란 독가스를 이용한 화학전, 세균이나 미생물을 사용한 생물학전, 핵무기나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방사능전을 총칭한다.
 - 화학전 : 적에게 살상을 주기 위하여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운용하는 전쟁형태
 - 생물학전 : 적에게 살상을 주기 위하여 전염성이 강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사용하는 전쟁형태
 - 방사능전 : 적에게 살상을 주거나 지역사용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핵무기 또는 방사능 물질을 운용하는 전쟁형태

(2) <와생방상황 경보시> 행동요령

-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 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건물의 위층으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로 대피시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오염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 핵 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습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가 넓게 독성 화학물질이나 세균 또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호장비의 착용 등 개인 방호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 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화생방전> 주민신고 요령

-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정보원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전화 112 또는 113번에 신고한다. 가까운 이웃사람에게 전파, 신고한다.
- 신고대상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자
 - 독성이 강한 가스냄새
 - 범죄자, 징집 및 동원기피자
 - 기타 국가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 등

(4) <화학 공격시> 행동요령

- 가스경보시 전 가족과 이웃에 알리고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가 없으며 물수건, 비닐포 등으로 호흡기와 몸을 보호한다.
- 방독면을 착용하고 닫은 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5) <생물학 공격시> 행동요령

- 예방주사를 맞고 위생을 청결히 한다.
- 물은 끓여 마시고, 날 음식은 먹지 않는다.
- 방독면을 착용후 경보를 전파한다.
- 방독면이 없으면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보호한다.
-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변을 청결히 한다.

(6) <핵 공격시> 행동요령

- 핵 공격시 전 가족과 이웃에 알리고 지하대피소로 대피한다.
- 야외에서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폭풍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리면서 눈, 귀, 코를 막는다.
- 낙진이 예상될 때는 방독면이나 긴옷을 착용하고 외부 활동을 금해야 하며, 낙진 오염시는 샤워를 하고 의복을 교체한다.

(7) <화생방 공격우> 행동요령

- 민방위 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나선다.
- 화생방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우선 오염지역이 아닌 곳으로 옮긴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고, 증상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해독제 주사나 제독제를 발라준다.
- 피해가 발생하면 동사무소 등에 빨리 신고하고,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장비와 시설은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다.

5. 《비상시》에 필요한 물자

(1) 비상용 생활필수품

- 식 량 : 가구별로 15~20일분 정도
-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 기 타 : 라디오, 배낭, 핸드폰,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라이터), 비누, 소금 등

(2) 가정용 비상약품(비상구급낭)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 의료기구 : 핀셋, 가위
-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

(3) 와생방전 대비물자

-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2 풍수해 발생시 행동요령

□ 장마전 대비

《가정에서는》

- 우리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의 막힌 곳을 정비하고, 오래된 축대, 담장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정비하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한다.
-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한다.

《상습 침수지에서는》

- 우리집이 수해상습지구, 고립지구, 하천범람 우려지구 등 어떤 지구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둔다.
- 대피로 지정된 학교 등 대피장소, 헬기장을 반드시 알아두고, 전화, 확성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 둔다.
-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간의 연락방법을 강구하여 둔다.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 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한다.
- 위험한 급경사란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둘러보고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을 막는다.

《어촌 및 애안지역에서는》

- 수산 증·양식, 시설물을 점검하여 균열, 파손 부분은 사전 보수하고 어선의 통신장비, 항해장비, 구명장비 등의 기능을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등산, 예수옥장,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

- 라디오를 휴대하여 기상청취를 습관화 하고 기상악화시 스스로 판단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각종 공사장에서는》

- 배수시설 및 양수기 등 응급대책에 필요한 수방물자를 비축토록 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막도록 한다.

□ 호우 태풍이 올때

《가정에서는》

- 라디오, TV를 통해 기상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축대나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 긴급사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 확인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 합시다.

《보행자는》

-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말고 전신주, 큰나무 밑은 피하여 낮은 곳으로 가거나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 물에 잠긴 도로는 가급적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한다.

《차량운행은》

-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하여 아는 길로 저단기어로 운행토록 하고 하천변 주차차량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상습침수지역에서는》

-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권고에 따르도록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정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 배수로는 깊이 파주고 과수목이나 비닐하우스는 받침을 보강하고 외부를 단단히 묶어 준다.
- 경사도가 30° 이상이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본다.

《어손 및 애안지역에서는》

- 선박끼리 부딪쳐 부서지지 않게 고무타이어를 충분히 부착하고 소형 선박은 육지로 끌어올리고 어망, 어구는 미리 걷어 피해를 방지한다.

《등산, 애수욕장,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

-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고 계곡은 물살이 거세므로 건너지 않는다.
- 야영중 강물이 넘칠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거나 무리하게 건져 올릴 생각은 하지 말고 몸만이라도 신속히 대피한다

《각종 공사장에서는》

- 작업을 중지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한다
- 굴착한 웅덩이에 물이 들어가는지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여 보강시설 등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하천을 횡단하는 공사장에서는 상류지역의 강우량을 지속적으로 파악, 수위상승에 대비, 차량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한다.

□ 긴급사태 발생시

《집이 침수될 때는》

- 우선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한다.

《등산, 낚시, 야영, 피서지에서 조난 당했을 때는》

- 119구급대에 신속히 알리고, 구조대가 발견하기 쉬운 곳으로 대피하여 불을 피워 연기를 내거나 옷가지를 매달아 위치를 알리고 체력 및 체온을 유지하고 조난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식량을 적절히 조절한다.

《저수지, 제방이 붕괴될 때는》

- 행정관서 등에 신속히 알리고 하류지역 주민에게 급히 연락하여 대피시키고 필요하면 마을주민을 동원하여 신속히 응급복구를 실시한다.

《사람이 사망했거나 부상당했을 때는》

-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읍면동사무소나 119구급대에 신속히 알리고 부상자는 응급처치를 취하여 환자를 보호한다.

□ 호우·태풍이 지난 간 후

《침수되었던 집에 들어 갈 때는》

-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킨후 들어가고 전기설비, 수도관, 가스관을 점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알려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침수된 농작물 관리는》

- 즉시 농약을 살포하고 신속히 물빼기를 실시하고 쓰러진 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피해가 심한 작물은 대파를 실시한다.

《수산시설물 및 생물관리는》

- 어장내의 오물 및 흙탕물을 빨리 제거해 주고, 신선한 용수로 대체하고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해 주고 질병여부를 확인하여 어방약제를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해 준다.

《재해를 입은 마을에서는》

- 이재민은 읍면동에서는 지정한 수용장소로 이동하고 구호요원의 안내에 협조한다.
-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잘 보살피고 필요시 마을지도자 중심으로 피해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은 이재민구호는 물론 무너진 가옥, 도로 등 응급복구에 참여한다.

3 폭설시 대응요령

□ 차량운전자는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하기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삽 등)휴대하고 감속, 서행운행
- 라디오 등을 청취하여 교통상황 파악하기
- 용이한 눈 치우기를 위해 도로변 주차 삼가기
- 미끄럼방지를 위해 짐과 사람 뒤쪽에 태우기
- 비상시 대비 보험회사 등 긴급출동 번호 알아두기

□ 가정에서는

- 내집앞,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우기
- 빙판길에 모래를 뿌려서 미끄럼사고 방지하기
-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하기

□ 농촌 산간지역에서는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 시설은 받침대 보강 등 보호조치 하기
- 빈 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 보호하기
- 비닐찍기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 노후가옥, 각종 공사장 등 안전점검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기
-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 하산 및 귀가
- TV 라디오 등을 청취하여 기상 및 교통상황 파악하기

□ 해안지역에서는

- 각종 선박 등 대피, 결박 조치하기
- 수산, 증·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 조치하기
- 주민, 낚시객, 행락객 등 해안가 접근 하지 않기
- TV, 라디오 등을 청취하여 기상 및 교통상황 파악하기

4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 지진대비 요령

- 가정에서는 가구가 쓰러질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L자형 버팀대, 철자 등을 사용하여 가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 가구가 넘어져 출입문을 막거나 사람위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배치에 신경 써야 합니다.
- 벽돌 벽에 금이 갔는지 화분이 놓여 있는지에 대해 점검합니다.
- 프로판 가스통은 지진발생시에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잘 고정되어 있는지, 가스가 새 염려가 없는 지를 자주 점검합니다.
- 지붕에 기왓장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안테나 등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 피난에 대비한 비상물품(물, 음식, 후레쉬, 속옷 등)을 준비하여 둡시다.
-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평소에 재해대응 훈련에 참가하고 가상지진을 체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 지진에 대비하여 피난로 및 피난절차를 확인하고 지진에 대비한 가족 재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 집안에 있을때 사용되는 불을 끄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정신적 공포로 인해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행동해야 합니다.
- 고층건물 사이에 둘러 쌓여 있을 때에는 창문유리나 간판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머리를 보호하여 가까운 공원이나 공터로 대피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층의 복도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쇼핑몰은 대체로 안전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강한 충격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 극장에서는 가방 등을 이용해 머리를 보호하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 육교에서는 육교가 흔들리는 것에 대비해 기둥이나 벽을 잡고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 해변가나 강하구에 있을 때에는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으므로 높은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소방방재청 민방위과-154(2013.1.9) 「2013년도 민방위훈련지침」
- 서울시 민방위과-933(2013.1.18) 「테마훈련 T/F 구성·운영계획」

□ 지침 방향

- 「비상대비 실제훈련 실시」에 대한 절차와 방법 제시
- 실제훈련 모델을 유형별로 표본을 산출하여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이해 도모

□ 지침 구성

- 총론 : 지침작성 목적 / 범위 / 적용
- 내용 : 민방위테마별 훈련(12종), 을지연습·충무 테마별 훈련(4종 18개)
- 참고자료 : 부록 11종 (화생방 공격시 행동요령, 비상대비 물자준비 등)

□ 훈련 적용

- 민방위 훈련 및 비상대비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자치구, 사업소 및 유관기관 등에 적용
- 훈련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상황의 변동 및 훈련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본 지침서는 표준이 되는 요소만 발췌 수록하였으며,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 시행되고 있는 절차 적용

따로붙임 : 비상대비 종합훈련 지침 1부.